

“단계적 일상 회복”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(21. 11. 04.) 종료 안내

□ 배경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‘23. 6. 1. 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(심각→경계)하고,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
-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(21.11.04.)을 적용한 “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”는 **‘23. 6. 30.일 기준으로 종료하고자 함**

□ 적용대상: 배치전·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·치아부식증 검사 대상 근로자

□ 변경내용: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

- (종전)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감염 예방 조치를 하고 검사 실시(붙임 검사방법 참고)
- (변경) ‘23. 7. 1. 이후부터 실시하는 배치전·특수 건강진단의 **폐기능검사, 치아부식증검사는 예외없이 실시**

- 다만, 겸진 당일 이상 소견(발열, 기침 등)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*하고,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

* 근로자·사업주는 진단기관에 ‘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’ 제공 요청

□ 적용시점: ‘23. 7. 1.

붙임

폐기능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방법 (~'23. 6. 30. 까지 유효)

- ❖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「폐기능검사* 및 치아부식증 검사**」는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되는 시점까지 다음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
 - * 폐기능 검사: 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 연속측정, 비특이기도 과민검사
 - ** 치아부식증 검사가 있는 유해인자는 불화수소, 염화수소, 질산, 황산, 염소가 있음

- (폐기능검사) 특수·배치전건강진단 1차 항목에 「폐기능검사」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은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건강진단결과를 판정

※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수검자의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 및 문진(mMRC 호흡곤란 점수나 COPD 평가 검사 활용 권장), 호흡음 청진,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진단 판정

- 다만,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

【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으로 폐기능검사 대상 유해인자 27종】

- 1.글루타르알데히드, 2.디에틸렌트리아민, 3.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(무수말레인산),
4.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, 5.베릴륨, 6.코발트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
7.톨루엔-2,4-디이소시아네이트, 8.톨루엔-2,6-디이소시아네이트, 9.프탈릭언하이드라이드(무수 프탈산),
10.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, 11.황화나衲, 12(무기)주석과 그 화합물, 13.미네랄 오일미스트(광물성 오일),
14.곡물 분진, 15.나무 분진, 16.니켈 및 그 화합물, 17.광물성 분진, 18.면 분진, 19.석면분진,
20.산화질(분진 및 흡에 한정함), 21.유리섬유 분진 22.인비타민과 그 화합물, 23.알루미늄과 그 화합물, 24.용접 흙, 25.카드뮴과 그 화합물, 26.크롬과 그 화합물, 27.텅스텐과 그 화합물

- (치아부식증 검사) 특수건강진단의 치아부식증 검사는 치과의사가 치아부식증에 관한 **과거력과 현재 증상에 대한 문진**을 통해 구강 내 시진 등 추가 진찰 없이 실시 가능
 - 이 경우 **과거력 및 증상 문진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검사표에 기록**
 - 다만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치아검사(부식증, 교모증) 및 치주조직 검사표 작성 등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예방 조치하고 실시